

## 9.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法中 改正法律(案) 立法豫告

農林部公告 第1996-57號 1996. 8. 10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운용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재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함.
- 나. 세출에 위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을 추가함.

### 개 정 이 유

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년 1조 5천억원 수준의 농어촌특별세를 마련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농어촌 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 왔으나, 초기년도부터 동 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고, 특히 법인세 부가분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기한이 '96사업년도로 만료됨에 따라 동 회계의 세입재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동 회계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의 견 제 출

—7247, 503-724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법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(참조: 투자심사담당관, 전화 503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 주소 및 전화번호 등

주택회보